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6고단286 무고
피 고 인 A
검 사 윤오연(기소), 서진아(공판)
판 결 선 고 2026.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이 2021. 4. 9.경부터 2021. 10. 1.경까지 피고인 몰래 권한 없이 C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24,700,000원을 총 9회에 걸쳐 B 또는 B 아들 D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 B은 2021. 2. 26.경 피고인과의 동업 관계를 해지하면서 피고인 명의 계좌에 대한 권한을 인수받아 이를 사용할 권한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7.경 대구 북구 동암로 130에 있는 대구강북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3. 4. 13.경 같은 경찰서 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9)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7, 16)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9)

1. 동업계약서, 동업해지계약서

1. 무고대상 사건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4)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죄 없는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써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범죄이다.

○ 이 사건 피무고자는 피고인의 허위고소 등으로 인하여 상당 기간 동안 수사의 대상이 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등을 받았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는 등으로 유·무형의 피해를 입었다.

○ 현재까지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무고범행을 자백하여 법률상 필요적 감경사유가 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결과적으로 피무고자에 대한 형사처벌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 피고인과 피무고자 사이에 동업계약 해지 등에 따른 정산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피무고자로부터 정산 받아야 할 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9-14

판사 장동민 _____